

Vol.1578



법원공보

2019. 10. 15. TUE

● 목 차

내규	1369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1371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예규	1373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375	기간제 및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1384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1386	
인사	1389	
공지사항	1391	

● 내 규

◎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법원행정처내규 제93호 2019. 9. 27. 결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된다.

③ 부단장과 단원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단장은 차세대전자소송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의 허가를 받아 추진단 내에 단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차세대전자소송 사업 계획의 수립
2. 차세대전자소송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
3. 차세대전자소송 사업의 집행 및 점검
4. 그 밖에 차세대전자소송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추진단의 운영) ① 단장은 추진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내 각 실·국 및 관계 기관에 차세대전자소송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추진단 내에 설치된 팀의 팀장은 단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팀원을 통솔하며 팀에 부여된 임무를 처리한다.

제5조(추진단 업무의 보고 및 심의) ① 단장은 매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차세대전자 소송의 주요 업무와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 보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법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차세대전자소송 관련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안 준비
2. 차세대전자소송 관련 예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6조(조사연구위탁 등) ① 단장은 차세대전자소송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 법원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추진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에 응할 경우에는 여비 등 필요한 경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법원행정처내규 제94호 2019. 10. 1. 결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래등기 시스템구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미래등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된다.

③ 부단장과 단원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단장은 미래등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의 허가를 받아 추진단 내에 단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미래등기 사업 계획의 수립
2. 미래등기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
3. 미래등기 사업의 집행 및 점검
4. 그 밖에 미래등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추진단의 운영) ① 단장은 추진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내 각 실·국 및 관계 기관에 미래등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추진단 내에 설치된 팀의 팀장은 단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팀원을 통솔하며 팀에 부여된 임무를 처리한다.

제5조(추진단 업무의 보고 및 심의) ① 단장은 매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미래등기의 주요 업무와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 보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법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미래등기 관련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안 준비
2. 미래등기 관련 예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6조(조사연구위탁 등) ① 단장은 미래등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 법원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추진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에 응할 경우에는 여비 등 필요한 경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 규

◎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95호 2019. 9. 25. 결재)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문”을 “확정되어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문”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5항 중 “제2조제3항 단서”를 “제2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판결문 제공 신청인 및 판결문의 범위)</p> <p>①·② (생략)</p> <p>③ (생략)</p> <p>1. 2013. 1. 1. 이후 <u>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문</u></p> <p>2. ~ 4. (생략)</p> <p>④ (생략)</p>	<p>제2조(판결문 제공 신청인 및 판결문의 범위)</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 <u>확정되어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문</u></p> <p>2. ~ 4.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판결문 제공 신청에 대한 처리 등)</p> <p>①·② (생략)</p> <p>③ 법원행정처 등은 판결문 제공의 신청을 받은 경우 <u>제2조제3항 단서</u>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다.</p> <p>④ (생략)</p> <p>⑤ 법원행정처 등은 <u>제2조제3항 단서</u>에 해당되어 판결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판결문의 사건번호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판결문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⑥·⑦ (생략)</p>	<p>제5조(판결문 제공 신청에 대한 처리 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제2조제4항</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u>제2조제4항</u> ----- ----- ----- -----</p> <p>⑥·⑦ (현행과 같음)</p>

◎ 기간제 및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96호 2019. 10. 7. 결재)

기간제 및 공무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다음에 제21조의2(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제21조의3(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제21조의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21조의5(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3(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21조의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 ④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21조의5(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관리부서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 ③ 관리부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지 제 8-2호 규정에 의한다.

제33조제2항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제48조제8호 다음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 9.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1조의2(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p> <p>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p> <p>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신 설〉</p>	<p>제21조의3(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p> <p>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 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 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현행

〈신설〉

〈신설〉

개정안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21조의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 ④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21조의5(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

-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관리부서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현 행

제33조(휴직)

- ① (생 략)
- ②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생 략)

제48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 1. ~ 8. (생 략)
- 〈신 설〉
- 9. (생 략)

개 정 안

- ③ 관리부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지 제8-2호 규정에 의한다.

제33조(휴직)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6개월 -----

-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 1. ~ 8. (현행과 같음)
- 9.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 10. (현행 제9호와 같음)

[별지 제8-2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사용자는 관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업무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2.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

① 사용자는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충상담원이 있는 경우 그를 상담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성을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을 고루 배치하며, 직원들 사이에 신망이 높은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결재권자 및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4. (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5. (상담)

① 위 4. 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 상담원은 지체 없이 신고인을 대면하여 상담한다.

- ②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상담원은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한다.
- ③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방법 및 사용자 내 처리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
- ④ 상담원은 상담이 종료하면 그 결과를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상담원은 상담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도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6. (당사자 간 해결)

- ① 상담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예방·대응 담당자를 통하여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 ② 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7. (정식 조사)

- ① 사용자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식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8.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명 이내의 조사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으면 그 위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운영위원회¹⁾로 보고서를 이관한다.

1) 기간제 및 공무원직 근로자 관리규정(행정예규 제1155호) 제7조에서 규정하는 운영위원회

- ⑤ 조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⑥ 조사위원회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8. (조사위원회)

-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조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사용자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차순위자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9.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사용자는 7.에 따른 정식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10.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 ① 7. ④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이관되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③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차순위자가 지체 없이 위원회 소집을 청구하고 소집된 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사용자에게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내용을 보고한다.
- ④ 위원회는 보고를 받으면 사용자에게 대한 조치를 의결한다.

11. (사건의 종결)

- ① 사용자는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다만,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운영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하여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 ① 사용자는 10.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 ② 사용자는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 ③ 사용자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 간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

13. (징계)

- 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기간제 및 공무원 근로자 관리규정 제48조제7호, 제9호) 등에 따르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신고자 또는 사건 관련 진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14. (재발방지조치 등)

- ① 사용자는 사건이 종결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에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97호 2019. 10. 7. 결재)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에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다.”를 “라.”로 하고,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용		
계급	임 용 자 격	
9급	자격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공인 2단 이상 소지자
	응시연령	20세 ~ 40세
	학력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비고 : 무도공인단증은 태권도·유도·검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대한태권도협회·대한유도회·대한검도회)가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합기도의 경우 법 인으로서 중앙본부가 있으며 8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군데 이상의 체육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7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제65조 관련)
 가. ~ 나. (생략)
〈신설〉

다. (생략)

개 정 안

별표 7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제65조 관련)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용		
계급	임용자격	
9급	자격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공인 2단 이상 소지자
	응시연령	20세 ~ 40세
	학력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비고 : 무도공인단증은 태권도·유도·검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대한태권도협회·대한유도회·대한검도회)가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합기도의 경우 법인으로서 중앙본부가 있으며 8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군데 이상의 체육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종전의 다.와 같음)

● 신법령 목록 (2019. 9. 16. ~ 9. 30.)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조약】				
조약제2430호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2019. 9. 19	19589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0077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9. 17	19587	4
대통령령제300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3007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30080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30081호	충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
대통령령제30082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24
대통령령제3008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7
대통령령제3008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
대통령령제30085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
대통령령제3008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9. 9. 20	19590	4
대통령령제30087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9. 24	19592	4
대통령령제30088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30089호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30090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30091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3009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3009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3009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9. 24	19592	11
대통령령제3009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30096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30097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제30098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

【총리령】

총리령제156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9. 30	19596	4
총리령제1564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부령】

환경부령제82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9. 16	19586	3
기획재정부령제75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9. 17	19587	30
교육부령제18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교육부령	"	"	33
행정안전부령제137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9. 19	19589	22
여성가족부령제14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3
행정안전부령제13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9. 20	19590	5
환경부령제825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
국토교통부령제65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9. 23	19591	4
국방부령제995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9. 24	19592	17
농림축산식품부령제394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	"	17
산업통상자원부령제346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2

보건복지부령제671호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9. 24	19592	27
환경부령제82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9
보건복지부령제670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9. 25	19593	4
환경부령제82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
국방부령제996호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9. 9. 26	19594	3
국토교통부령제652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
보건복지부령제67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9. 9. 27	19595	4
산업통상자원부령제34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
산업통상자원부령제348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0
고용노동부령제263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9. 30	19596	6

인사

인사발령 법 제157호

2019. 9. 3.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퇴직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송창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9. 9. 4.자) 끝.

인사발령 법 제162호

2019. 9. 20.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겸임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유동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에 겸임함

(2019. 9. 2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64호

2019. 9. 27.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지명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김순열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2. 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이민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19. 9. 30.자) 끝.

● 공지사항

◎ 9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 대법원열람실에 9월분 법률도서·일반도서(147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14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高麗法學 v.92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高麗法學 v.93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民主法學 v.70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관악사	2019	
法制研究 v.56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9	
法學 v.60-2 / 서울대학교, Seoul Law Journal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叢 v.36-2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9	
法學研究 v.22-2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研究 v.29-2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成均館法學 v.31-2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法學研究院	2019	
亞州法學 v.13-1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审判的邏輯, 上册: 知识产权案件的审判逻辑 / 骆电	法律出版社	2019	
审判的邏輯, 下册: 一般民商案件的审判逻辑 / 骆电	法律出版社	2019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アメリカ法 v.2018-2 / 日米法學會	日米法學會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규제와 법 v.12-1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서울대학교	2019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 /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2019	
노동법 벌칙해설. II /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9	
노동정책연구 v.2019-2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9	
사회보장법학 v.8-1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9	
지식재산연구 v.14-2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특허소송에서의 전문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9	
航空宇宙政策·法學會誌 v.34-1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韓國航空宇宙政策·法學會	2019	
著作權研究 v.45 / 著作權法學會	有斐閣	2019	
租稅研究 v.2019-7 / 日本租稅研究協	日本租稅研究協會	2019	
(判例)特許·實用新案法, 第5-M卷: 審決取消訴訟(II-M)-実体 / 無體財産法研究會	新日本法規	2019	
2017年农业植物新品种保护年度报告 / 农业农村部植物新品种保护办公室	中国农业出版社	2018	
Acing Intellectual property: a checklist approach to solving intellectual property problems / Robinson, W. Keitch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Business Organizations: Keyed to Macey's Casebook on Business Organizations / West Academic Publishing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Construction Accident Litigation / Conger, Dwight G	Thomson Reuters	2019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Forms: Planning, Finance, Building, 4 / Nowlin, David	Thomson Reuters	2019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Forms: Planning, Finance, Building, 1 / Nowlin, David	Thomson Reuters	2019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Forms: Planning, Finance, Building, 2 / Nowlin, David	Thomson Reuters	2019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Forms: Planning, Finance, Building, 3 / Nowlin, David	Thomson Reuters	2019	
Customs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rainer, Timothy P	Thomson Reuters	2019	
Historic preservation law in a nutshell / Bronin, Sara C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Intellectual property: cases and materials / Lange, David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International dimensions of U.S. securities law / Hicks, J. William	Thomson Reuters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nd use planning and development regulation law / Juergensmeyer, Julian Conrad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Modern water law: private property, public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s / Adler, Robert W	Foundation Press	2018	
Patry on fair use / Patry, William F	Thomson Reuters	2018	
Right of Publicity in a Nutshell / Murray, Michael D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The) law of hazardous wastes and toxic substances in a nutshell / Sprankling, John G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The) law of public education / Russo, Charles J	Foundation Press	2018	
江苏专利发展研究 / 郑伦幸	知识产权出版社	2018	
农业知识产权 / 宋敏	中国农业出版社	2018	
法官智典: 知识产权卷 / 高憬宏	人民法院出版社	2018	
商标实务指南与司法审查 / 曹阳	法律出版社	2019	
深圳经济特区40年知识产权经典案例汇览 / 深圳市知识产权经典案例汇览项目组	中国法制出版社	2019	
"一带一路"建设与知识产权风险防范 / 钱建平	知识产权出版社	2018	
"一带一路"国家知识产权法律译丛, 第二辑 / 重庆知识产权保护协同创新中心	知识产权出版社	2018	
"一带一路"国家知识产权法律译丛, 第一辑 / 重庆知识产权保护协同创新中心	知识产权出版社	2018	
"一带一路"商标法律制度研究 / 林秀芹	知识产权出版社	2018	
专利文献研究 2017 / 国家知识产权局 专利局 专利文献部	知识产权出版社	2018	
中国知识产权理论体系研究 / 吴汉东	商务印书馆	2018	
中国版权年鉴 v.2018 / 中国版权年鉴编委会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9	
知识产权精品案例评析(2018) / 广州知识产权法院	知识产权出版社	2019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법 동향과 실무 v.53 / 한국,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2019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네트워크 인권법학회	국가인권위원회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nfronting Corruption : past concerns, present challenges, and future strategies / Heimann, Fritz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Hedge fund disclosure documents: a user's guide to confidential private placement memoranda for funds formed as series limited partnerships / Nowak, Gregory J	Thomson Reuters	2018	
Immigration Law and Defense. 1: Chapters 1 to 13 / Hornik, Philip	Thomson Reuters	2019	
Immigration Law and Defense. 2: Appendices, Tables, and Index / Hornik, Philip	Thomson Reuters	2019	
Immigration Legislation Handbook / Fragomen, Austin T	Thomson Reuters	2019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roblems, cases, and materials / Chow, Daniel C.K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International sales law-CISG in a nutshell / Ferrari, Franco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Law of Asylum in the United States / Anker, Deborah E	Thomson Reuters	2018	
Some Kind of Justice: the ICTY's impact in Bosnia and Serbia / Orentlicher, Diane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法研究 v.47-4 / 한국공법학회	韓國公法學會	2019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한 헌법원칙에 관한 연구: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분석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법원행정처	2019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2017	
북한인권백서 v.2019 / 북한인권센터	통일연구원	2019	
憲法學研究 v.25-2 /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9	
Constitutional Law: Keyed to Chemerinsky's Casebook on Constitutional Law / West Academic Publishing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48 / Germany Bundesverfassungsgericht	J.C.B.Mohr	2019	
Jahrbuch des Öffentlichen Rechts der Gegenwart v.67 / J.C.B.Mohr, Häberle, Peter	J.C.B.Mohr	2019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8) 부패·공익침해 신고 사례집, 제17집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9	
矯正研究 v.83 / 한국교정학회	韓國矯正學會	2019	
양형위원회 제82차 회의 안건집/자료집, 82 /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2017	
Children and the law in a nutshell / Ramsey, Sarah H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Computer crime law: 2017 Statutory and case supplement to / Kerr, Orin S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Contemporary criminal law / Osler, Mark William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Domestic violence law / Lemon, Nancy K. D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The) law and policy of sentencing / Branham, Lynn S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The) legal aspects of policing / Sanborn, Joseph B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The) Oxford encyclopedia of crime, media, and popular cultur, 1 / Rafter, Nicole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The) Oxford encyclopedia of crime, media, and popular cultur, 2 / Rafter, Nicole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The) Oxford encyclopedia of crime, media, and popular cultur, 3 / Rafter, Nicole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The) Oxford Handbook of Prisons and Imprisonment / Wooldredge, John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White collar crime / Podgor, Ellen S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保險法研究 v.13-1 / 韓國保險法學會	韓國保險法學會	2019	
商事判例研究 v.32-2 /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9	
株式會社法大系, I: 총설·주식회사의 설립·주식과 주주 /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9	
株式會社法大系, II: 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20	
株式會社法大系, III: 재무와 회계, 주식회사의 공시,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주식회사의 소멸,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외국회사, 벌칙 /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海事法研究 v.31-2 / 한국해사법학회	韓國海事法學會	2019	
機關投資家の議決權行使方針及び結果の分析: 2019年版 /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9	
商法判例百選 / 有斐閣	有斐閣	2019	
Aktien- und GmbH-Konzernrecht: Kommentar / Emmerich, Volker	C.H.Beck	2019	
GmbH-Gesetz: Kommentar, Band 1: §§ 1-34 / Scholz, Franz	Otto Schmidt	2018	
Münche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Band 1: §§ 1-75 / Kropff, Bruno	C.H. Beck	2019	
Münchener Kommentar zum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GmbHG band 1: §§ 1-34 / Fleischer, Holger	C.H.Beck	2018	
Münchener Kommentar zum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GmbHG band 2: §§ 35-52 / Fleischer, Holger	C.H.Beck	2019	
Münchener Kommentar zum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GmbHG band 3: §§ 53-88 / Fleischer, Holger	C.H.Beck	2018	

[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個人破産・回生實務 /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박영사	2019	
法人破産實務 /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박영사	2019	
回生事件實務 (上) /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박영사	2019	
回生事件實務 (下) /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박영사	2019	
Handbook of Crimes and Defenses in the Military / Conway, Daniel	Thomson Reuters	2018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Federal rules of evidence in a nutshell / Graham, Michael H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Federal standards of review: Review of district court decisions and agency actions / Edwards, Harry T	Thomson Reuters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blems in evidence / Broun, Kenneth S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범죄수사학연구 v.5-1 / 경찰대학	경찰대학	2019	
Advanced Evidence: Using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in Pretrial and Trial Advocacy / Williams, C. J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American criminal procedure: cases and commentary / Saltzburg, Stephen A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A Short & Happy Guide to) Evidence / Beckman, Sydney A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Criminal Defense Ethics: Law and Liability / Burkoff, John M	Thomson Reuters	2018	
Psychological and Scientific Evidence in Criminal Trials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8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식)민법 [1]: 총칙(1) § 1~§ 96 / 김용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9	
(주식)민법 [1]: 총칙(2) § 97~§ 113 / 김용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9	
(주식)민법 [1]: 총칙(3) § 114~§ 184 / 김용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9	
(주식)민법 [2]: 물권(1) § 185~§ 261 / 김용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9	
(주식)민법 [2]: 물권(2) § 262~§ 278 / 김용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9	
(주식)민법 [2]: 물권(3) § 279~§ 355 / 김용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9	
(주식)민법 [2]: 물권(4) § 356~§ 372 / 김용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9	
事業再生と債權管理 v.165 / 金融財政事情研究會	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19	
Advanced torts: Cases and materials / Christie, George C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California family law: a practice focused casebook / Myers, John E,B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Community Property in a Nutshell / Carrillo, Jo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Zivilsachen(BGHZ) v.217 / Germany Bundesgerichtshof	Carl Heymanns	2019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Zivilsachen(BGHZ) v.218 / Germany Bundesgerichtshof	Carl Heymanns	2019	
Family law in perspective / Wadlington, Walter	Foundation press	2018	
Landlord and tenant law in a nutshell / Hill, David S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4: Schuldrecht-Besonderer teil I(§§ 433 - 534); Finanzierungsleasing; CISG / Rebmann, Kurt	C.H.Beck	2019	
Personal property in a nutshell / Burke, Barlow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Torts: Keyed to Dobbs's Casebook on Torts and Compensation / West Academic Publishing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Toxic torts practice guide. 1 / Gottlieb, Karen A	Thomson Reuters	2018	
Toxic torts practice guide. 2 / Gottlieb, Karen A	Thomson Reuters	2018	
Wills, trusts, and estates / Dukeminier, Jesse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7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ALR Fed 2d, vols. 1-94, ALR Fed 3d, vols. 1-39: index A-Z / Lawyers Co operative Publishing Company	Thomson Reuters	2019	
American law reports federal third series ALR fed 3d v.35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8	
American law reports federal third series ALR fed 3d v.36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8	

• 일반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고용노동백서 v.2019 /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9	
國防研究 v.62-2 / 국방연구원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2018. 5. 10 ~ 2018. 10. 31. 제2권 상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	2019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2018. 11. 1 ~ 2019. 5. 9. 제2권 하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	2019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2018. 5. 10 ~ 2019. 5. 9. 제2권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	2019	
통일정책연구 v.28-1 /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19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말글집 제2권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	2019	

• 정기간행물 목록

[국내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B.F.L (2019.9) 97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격월간
2	Legal Times V134	(주)리갈타임즈	월간
3	거래가격584호, 585호	(주)거래가격	월간
4	고시계751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5	노동법률2019.9	中央經濟社	월간
6	문학사상2019년 9월, 10월	문학사상사	월간
7	법과 사회61호	법과사회이론학회	반년간
8	사법행정 제60권 제8호(703호) / 9호(704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9	상사판례연구 32집2권	한국상사판례학회	계간
10	속보삼일총서1533+부록, 1534, 1535, 1536	삼일회계법인	주간
11	시사저널N1504~1509/1510~1511/1512~1527/1528~1529 /1530~1536/1537/1538~1559/1560~1561	독립신문사	주간
12	신동아2019.9.	(주)동아피디에스	월간
13	월간 인사관리 2019.9.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14	월간조선2019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2019.09.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월간
16	이코노미스트1498, 1499, 15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주간
17	종합물가정보587호 I, II, 부록	한국물가정보	월간
18	주간조선2571/2572/2573	조선일보사	주간
19	창작과 권리96호	세창출판사	계간
20	토지공법연구87호(2019.8.)	한국토지공법학회	계간
21	한국문헌정보학회지53권3호(2019.8.)	한국문헌정보학회	계간
22	항공우주법학회지34권1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반년간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23	해사법연구 31권2호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
24	현대문학 2019.9월	(주)현대문학	월간
25	형사정책 31권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연3회

[일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N2205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2	登記情報 59권 제8호	民法情報センター	월간
3	N.B.L 1150호	商事法務研究會	반월간
4	ジュリスト 1535호	有斐閣	격주간
5	パテント(Patent)별책21호(V72 4호) 845	日本弁理士會	월간
6	國際法外交雜誌118권 1호	有斐閣	계월
7	金融法務事情 2118호	金融財政事情研究會	순간
8	勞動法律旬報 1940	勞動旬報社	순간
9	法律のひろば 72권 8호	きょうせい	월간
10	法律時報 91권9호 / 별책 59호	日本評論社	월간
11	法律判例文獻情報 488호	第一法規	월간
12	法曹時報 71권7호	法曹會	월간
13	法學教室 467호	有斐閣	월간
14	銀行法務 21 845호	經濟法令研究會	월간
15	自治研究 95권8호	良書普及會	월간
16	判例タイムズ 1461호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17	判例時報N2407, 2408(임시증간), 2409호	判例時報社	순간

[양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954	Editorial Aranzadi S.A.	격주간
2	Archiv für Kriminologie;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Bd247H1-2	Max Schmidt-Romhild KG	격월간
3	Archiv für Pressrecht J50 H4	C. H. Beck	격월간
4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27 N3	Springer Customer Service Center GmbH	계간
5	Betriebs-Berater (BB) J74 H31, 32, 33, 34, 35, 19-index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6	Bundesgesetzblatt : Part 1 & Part 2 2019. I Nr28, 29, 30, 31/ II. Nr11, 15	Bundesanzeiger Verlagsges.mmbH	주2회
7	Computer und Recht 2019 H8 I4	Dr. Otto Schmidt	월간
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127 H1, 2, 3, 4	Giesecking	월간
9	Der Spiegel 2019 N33, 34, 35, 36, 37	Spiegel	주간
10	Deutsches Verwaltungsblatt(DVBL) (Includes: Verwaltungsarchiv) J134 H13, 15	Carl Heymanns	반월간
11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 J64 H15, 16	Otto Schmidt	격주간
12	Die Öffentliche Verwaltung(DÖV) J72 N14, 15, 16	Kohlhammer	반월간
13	Droit Social 2019 N7-8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14	Europarecht J54 H4	Nomos-Verl	격월간
15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51 No. 3	Cornell University	연3회
16	European Law Review V44 N4	Sweet & Maxwell	격월간
17	Euzw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30 H14, 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8	Familie Und Recht J30 H7, 8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19	Family Court Review VOL57 N3	Blackwell	계간
20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GRUR) J121 N8	VCH	월간
21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J166 H7, 8	R. v. Decker's Verlag, G. Schenck	월간
22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11 H15, 16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23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prechung 2019 H7,8	Stollfuß	월간
24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VOL68 P3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계간
25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31 N2	Oxford Journal	연3회
26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V36 N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27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Vol17 N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28	Journal of World TradeV53 I 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29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41 H8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월간
30	Juristen Zeitung (JZ) J74 H11, 12, 15-16	J.C.B. Mohr	반월간
31	Juristische Rundschau 2019 H8	Walter de Gruyter	월간
32	Juristische SchulungJ59 H8,9, 9-sup	C.H. Beck	월간
33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2015 H13-15	C.H.Beck	월간
34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 KritVJ102 H2	Nomos	계간
35	La Semaine Juridique 1. edition generale2019 N27,28,29,30-35	Juris-Classeur	주간
36	La Semaine Juridique 1. entreprise et affaires2019 N27,28,29,30	JCP	주간
37	La Semaine Juridique 2. notariale et immobiliere2019 N27,28,29,30-34	JCP	주간
38	L'actualitéJuridiqueDroitAdministratif (AJDA)2019 N27,28	Dalloz	주간
39	Le Droit Ouvrier N853(19.8.)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40	Lloyd's Law Reports:Insurance& Reinsurance 2019 P6	LLP	연10회
41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73 H14,15,16	Otto Schmidt	반월간
4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NJW)J72 H32,33,34,35,36, spezial 16,17	C. H. Beck	주간
43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36 H15,16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4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Nstz) J39 H8	C. H. Beck	월간
45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NVwZ) J38 H15,16	C. H. Beck	월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46	Nj Neue Justiz J73 H8	Nomos	월간
47	NZG(Neue Zeitschrift für Gasellschaftsrecht) J22 H22,23,24	Verlag C. H. Beck oHG	순간
48	Praxis des Internationalen Privat-und Verfahrensrechts (IPRax) J39 H1,2	Gieseking Verlag	격월간
49	Rabels Zeitschrift :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83 H1	J. C. B. Mohr	계간
50	Recht Der Arbeit J72 H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51	Recueil Le Dalloz N28 (2019)	Dalloz	주간
5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9 N2	Dalloz	계간
5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9. 8-9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54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9 N2	Dalloz	계간
55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économique 2019 N2	Dalloz	계간
5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en 2019 N2	EDITIONS DALLOZ	계간
57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2019 N2	EDITIONS DALLOZ	계간
58	Strafverteidiger(StV) J39 N8	Alfred Metzner	월간
59	The Economist Vol432 N9155(8.10./8.16.) / Vol432 N9156(8.17./8.23.) / N9157(8.24/8.30.) / N9158(8.31./9.6.) / M9159(9.7./9.13.)	The Economist Group	주간
60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40 N2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연3회
61	TIME 8.5./8.19./8.26./9.2.-9.9.	Time Asia	주간
62	Versicherungsrecht J70 H15,16	Versicherungswirtschaft e. V.	순간
63	WM(Wertpapier-Mitteilungen:ZeitschriftFürWirtschaftsUndBa) J73 N30,31,32,33, sup33,34,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64	Wuw(WirtschaftUndWettbewerb:ZeitschriftFürKartellrecht,W) J69 H7-8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65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ZAS) 2019.04. (193-240)	Manz	격월간
66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FAMRZ) J66 H12,14,15,16	Gieseking	반월간
67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B183 H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격월간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68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B131 H2	WalterGruyter	계간
69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recht(zsr) B138 part1-3, B138 N2의1	Helbing & Lichtenhahn	격월간
70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ZIP) J40 H29,30,31,32,33,34 / J40 index / EWIR 35 N14,15,16	RWS	주간
71	Zeitschrift für Europaeisches Privatrecht(ZEUP) 3/2019	C.H.Beck	계간
72	zfrv(Zeitschrift für Europarecht, Internationales Privatrecht und Rechtsvergleichung,) J60 H2	Manz	격월간

